

제천시 노사평화상 조례안
심사보고서

1. 심사 경과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유영화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제천시 관내 기업체의 노사평화에 기여한 노동단체와 근로자 및 기업체에 노사평화상을 시상함으로써 관내 전기업체에 노사화합과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2조(시상부문)
 - 시상부문은 노동단체, 근로자, 기업체 3개부문으로 하며, 필요시 공무원 및 시민을 포함.
 - 제3조(시상시기)
 - 시상 시기는 매년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시상
 - 제4조(시상대상)
 - 시상대상은 제천시에 소재한 노동단체, 근로자 및 기업체로서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에 적극 기여한 자
 - 제5조(후보자 추천)
 - 후보자 추천은 읍 · 면 · 동장 및 관내 기업체 및 노동단체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근하)

- 현재 제천시에서는 「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」에 근거하여 「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를 제정, 제천시와 근로자, 사용자가 노사협력 증진 및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
- 「제천시노사정협의회」 주요기능은 노사관계안정 및 화합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도모 등으로 되어 있어 노사평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시상에 관한 명문화된 내용은 없는 상황인 바, 금번 본 조례는 제천시 노사평화에 기여한 노동단체, 근로자, 사용자에 대한 정기시상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본 시상을 통해서 제천시 관내 노동단체나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, 향후 제2바이오밸리 준공과 입주 기업체의 정상가동시, 시상부문 확대도 예상이 되기에 본 조례는 제도도입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 없 음 ”

5. 소수 의견

“ 없 음 ”

6. 토론 요지

“ 없 음 ”

7. 심사 결과

“ 원안 가결 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 노사평화상 조례안 1부. 끝.